

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

신고인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주소 또는 소재지	
수수료 금 액	기존 원/kWh	변경 원/kWh
	증감률(%)	
시행	결정일	시행일

「전기사업법」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전력거래에 관한 수수료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.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
------	---